

「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민근 의원 외 14명

2. 제안이유

-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
 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
 -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
 - 「도로법」 제23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4. 1. 9. ~ 1. 15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교차로 및 교통사고 다발 발생 구역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교통안전 정보관리 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고 다발지역이었던 구미 사곡 오거리에 2018년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로 전년도(2017년) 대비 38.5%가량 사고가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,
-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